대통령령 제12,751호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建築士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士法의 改正(1989.4.1 法律 第4116號)에 따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現行 規定의 일부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建築士法의 改正으로 公務員에 대한 特別銓衡制度가 廢止됨에 따라 關聯 條項을 削除하고 7年 이상 建築職 公務員으로 勤務한 者에 대하여 建築士資格試驗科目의 일부를 免除하며, 2級建築士에 대한 特別銓衡 試驗科目의 一部를 削除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建築士資格試驗의 효율적인 관리와 地方의 관계 專門家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建築士委員會의 委員數를 17人이내에서 30人이내로 확대·조정함(令 第14條 第1項).

다. 現在 綜合工事監理를 받도록 되어 있는 共同住宅중 多世帶住宅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綜合工事監理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는 一般工事監理를 받도록 함(令別表1).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자 및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건축시공과목"을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시공과목"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건축구조과목"을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구조과목"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공무원으로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중 건축시공 및 건축법규 과목을 면제한다.

제14조 제1항중 "위원 17인이내"를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제2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별표1]의 1. 종합공사감리의 대상란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9878호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사가 왜 건축허가시 흙막이 설계도서를 신청도서에 포함해야 하나?

문제점 : 현재 관공서에서 건축허가도서중 지하 5m 이상 굴토시에 흙막이공사 도면과 구조계산 및 설계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관공서에서 주장,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바 건축사 업무도 아닌 흙막이 공사용 도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백만원씩 소비하면서(우리보수에서 지불할 수 없는 업무임) 실지로 도서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적 절차라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건축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기에 시정해야 한다.

해결점 : 흙막이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는 공사시공을 위한 소위 시공도면인 것이다. 지하 굴토/흙막이 방법은 시공회사의 Know-How로서 시공회사가 굴토/흙막이 방법을 설계해서 수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므로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제출은 건축사의 책임 사항이 아니고, 착공계를 관공서에 제출할 때 시공회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차후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이런일로 건축사가 이용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984년 서울시 편람(p.72-73)

(1) 분명히 착공시 제출토록 명기됨

(2) 행정편람 72p에 의하면 토목공사 착공시 제출하도록 됨.

- 방법 : 토공시 설계도서 작성 제출의 의무화
- 절차
  - 건축허가시 : 도서제출의 조건 여부
    착공신고시 : 굴토계획도, 지반개량, 지하수 처리계획도 등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제출
  - 준공신고시 : 토공사 설계도의 작성자의 확인서 첨부 확인 (별첨 양식 1참조)
- 확인
  - 시공자 L매일 2회이상 현장점검후 일지에 기록 보존 (별첨 양식 2)
  - 공무원 : 주 1회이상 점검후 안전관리카드에 기록 보존 (별첨 양식 3)

(3) 중구청 건축관계 회의시 분명히 착공전까지 관공서에 제출하면 착공허가 조건에 합당하다고 회의때 논의된 바 있다.